

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”로 한다.

제 1 조중 “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 교육행정기관에서”로 한다.

제 5 조 제3호중 “당 교육청”을 “본도 교육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제4호중 “교육감”을 “기관장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제3항중 “교육감”을 “기관장”으로 한다.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 (표창권자) 표창은 각 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.

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9 조 (표창추천)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은 본청의 각 국장, 담당관 및 각과장(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과장포함)과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(의뢰기관장포함)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0 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 표창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,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도 교육청에는 “충청북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”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, 위원은 각 국장,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.
2. 하급교육청에는 “충청북도○○ 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”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

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 내지 (별지 제3호서식)중 “충청북도교육감”을 표창을 수여하는 각 기관장 명의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<u>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에서</u> -----
제2조-제4조 (생략)	제2조-제4조 (현행과 같음)
제5조(감사장)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1. 본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2. 본도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협조 또는 공헌한 경우 3. 대외적으로 <u>당교육청의 명예를 높인</u> 선양한 경우	제5조(감사장)----- 1. ----- 2. ----- 3. ----- <u>본도 교육행정기관의</u> -----
제6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1-3 (생략) 4. 기타 <u>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경우	제6조 (상장)----- 1-3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기관장이</u> -----
제7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-② (생략) ③ 패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교육감이 정한다.</u>	제7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-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기관장이</u> -----
제8조(표창권자) <u>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</u>	제8조(표창권자) <u>표창은 각 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.</u>
제9조(표창추천)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	제9조(표창추천)-----

현행	개정(안)
<p>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<u>각 국·과장과 산하 기관장 및 유관기관장</u> (의뢰기관장 포함)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<u>교육감에게 추천</u>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표창 및 표창 추천 대상자를 심사, 결정하기 위하여 <u>교육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를 둔다.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위원회는 각 국장·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.</u></p> <p>⑥ <u>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⑦ <u>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<u>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<u>각 국장, 담당관</u> <u>및 각 과장(교육장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포함)과</u> ----- <u>표창권자에게</u> <u>제출.</u>-----</p> <p>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----- -----<u>표창권자</u> ----- -----</p> <p>1. <u>도 교육청에는 "충청북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"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, 위원은 각국장·담당관 및 각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.</u></p> <p>2. <u>하급 교육청에는 "충청북도○○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"를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</u></p>

현행	개정(안)
제11조-제13조 (생략)	<p>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-제13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부분발채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영은 서울특별시·직할시 및 도의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부교육감)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,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·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
제 3 조(공무원의 정원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제 2 장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 : 생 령

제 3 장 대구직할시·인천직할시·광주직할시·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

제 13 조(하부조직) ① 대구직할시·인천직할시·광주직할시·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에 총무과·초등교육국·중등교육국 및 관리국을 둔다.

②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,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.

제 14 조(공보담당관) ① 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.

대통령령 제 11559호 (1984.12.13.)

정부표창규정 (부분발책)

제10조 (표창권자) 표창은 대통령·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.

- 제13조 (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) ① 전조(중앙공적심사위원회)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